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제도*

– RoHS지침 및 WEEE지침의 이행법인 전기전자제품법을 중심으로 –

이 중 영**

I. 들어가는 말

유럽연합은 2003년 소위 전기제품폐기물의 현저한 증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특정위험성분 사용제한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지침(Die Richtlinie 2002/95/EG v.27.1.2003 zur Beschränkung der Verwendung bestimmter gefährlicher Stoffe i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소위 “RoHS지침¹⁾”이라 한다)과 「폐전기전자제품지침(Die Richtlinie 2002/96/EG v. 27.1.2003 über Elektro- und Elektronik- Altgeräte) (소위 “WEEE지침²⁾”이라 한다)³⁾을 제정하였다. 위의 두 지침의 제정으로 유럽연합은 폐기물처리량과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유해성분을 감축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에게 자사 제품의 회수와 환경친화적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1)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ktricals and electronic equipment.
- 2) Directive on the Waste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3) 유럽연합의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의 특정위험성분의 사용제한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지침(Die Richtlinie 2002/95/EG v.27.1.2003 zur Beschränkung der Verwendung bestimmter gefährlicher Stoffe i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ABIEG Nr.L 37 v. 13.2.2003)과 2003년 1월 27일 폐전기전자제품지침(Die Richtlinie 2002/96/EG v. 27.1.2003 über Elektro- und Elektronik-Altgeräte, ABIEG Nr.L 37 v. 13.2.2003).

독일은 2005년 3월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Das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 ElektroG, BGBl I, 762) (이하 “전기전자제품법”이라 한다)을 제정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두 지침⁴⁾을 이행하였다.

전기전자제품법은 제1조제1항제1문에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 제22조에 따른 제조자의 제품책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법은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피, 재사용의 보장, 폐기물량의 감축 및 유해성분의 사용금지 등 제조자에 대하여 다수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독일은 1980년대 중반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1년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명령에 관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전기전자제품법의 제정으로 독일에서 약 20년 동안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논쟁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년간 진행된 논의는 전기전자제품법의 입법과정에 많이 반영되었다. 입법과정에서 독일의 양대 산업체단체인 정보통신미디어단체(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e.V: BITKOM)와 중앙전기전자산업단체(Zentralverband Elektrotechnik- und Elektroindustrie e.V: ZVEI)가 적극적으로 입법절차에 참여하여 법률의 개별조문 성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전기전자제품법 제25조제1항은 2005년 3월 24일에 일부가 효력을 발하고, 동 법률 제5조는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하고, 제12조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하고, 그 밖의 조문은 2005년 8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조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의무를 장기적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2005년 11월 23일 또는 2006년 3월 23일까지 연장되도록 규정한 동법 제24조의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관계자는 법률 준수에 필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BITKOM 및 ZVEI는 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약 3억 5000만 내지 5억 유로를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4) 유럽연합의 전기전자제품지침에 관하여는 Holz, Die abfallrechtliche Verantwortung der Hersteller von Elektrogeräten, 2004.

이로 인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하는 일부의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독일의 전기전자제품법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에게 부여된 폐기물법상 제품책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는 앞으로는 제품의 회수와 환경친화적 처리를 보장할 수 있을 때에만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법은 원칙적으로 전기 또는 전자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므로 적용범위가 넓다. 또한 전기제품은 크게 10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것은 대형가전제품, 소형가전제품, IT-제품 및 전자오락기구 등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품이 배출되는 개인가정, 상업시설, 산업시설 또는 행정기관 등과 같은 배출영역은 이 법률의 적용범위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은 일상적인 가정폐기물과 분리되어 수집되어야 하고, 특별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취급되거나 재사용, 재활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이를 위하여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기관에 의하여 여러 곳에 설치된 폐제품수집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대표적인 환경규제규범으로 유럽연합의 RoHS지침과 WEEE지침은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동시에 유럽연합의 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려는 환경정책의 결과물로 유럽연합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의 변화를 주저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환경" 역시 기업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글로벌 경영체계의 최우선 과제이자 경영목표로 등장되었기 때문이다.

전기전자산업이 발전한 한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많은 전기전자제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RoHS지침과 WEEE지침을 이행한 독일의 전기전자제품법은 국내의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의 환경관련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유럽연합의 RoHS지침과 WEEE지침을 이행한 독일의 전기전자제품을 분석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적인 환경규범을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의 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입법적 근거로서 RoHS지침과 WEEE지침

1. RoHS 지침

유럽연합의 RoHS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와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가능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이나 인체에 보다 적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대체할 의무를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지침이다. 유럽연합의 역내 시장에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은 2007년 7월 1일부터 동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의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균질재료 안에서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그 결과 균질재료 안에서 수은(Hg), 납(Pb), 6가크롬(Cr6+), 브롬계난연제로 PBBs(polybromierte Biphenyl)와 PBDEs(polybromierte Diphenylether)는 각각 0.1%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카드뮴(Cd)은 0.01% 이상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연간 중전기, 전기전자제품이 연간 600만톤씩 증가하여, 1인당 약 20kg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써 유럽연합에서 연 평균 폐기물발생은 5%씩 증가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약 90% 정도가 사전처리과정 없이 토양에 매립되거나 소각됨으로 인하여 토양환경과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장기간 환경유해물질이 남아 있게 된다. 유럽연합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납의 40%, 소각시설에서 방출되는 납의 50%가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매년 수은은 평균 36톤, 카드뮴은 16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RoHS지침의 적용업종은 전기전자제품이고, 대상품목은 2006년 7월 1일부터 유통되는 대형가전제품(기기), 소형가전제품(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차판매기와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등이다.

2. WEEE지침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유럽연합이 제정한 지침이다. 제조자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의무를 부여하고 제

품유형별⁵⁾로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비율을 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하는 제조자만이 유럽연합 역내에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동지침에 의하면 폐가전제품의 회수, 재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의무가 부과되는 제품은 교류전압 1,000V, 직류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전자제품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2005년 8월 31일까지 제조자로 하여금 가전제품(B2C제품)과 사업자용 전기전자제품(B2B제품)의 폐기물을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로부터 무료로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동지침은 제품유형별로 재사용, 재제조 및 재활용 의무화율을 제시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자로 하여금 제시한 의무화비율을 준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지침에 따라 제조자는 2005년 8월 13일 이후부터 유통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유통된 폐전기전자제품은 제조자의 공동부담시스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조자간의 비용부담은 비용부담 시의 시장점유율에 따라서 배분된다. 제조자는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을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하기 전에 별도분리처리가 필요한 물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하여 처리하거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별도분리처리를 하여야 하는 제품은 PCB함유콘덴서, 냉매류(CFCs, HCFCs, HFCs, HC), 수은함유부품, 가스램프, 배터리, 표면적 10cm² 이상 LCD 및 백라이트, 음극선관(CRT), 핸드폰 인쇄회로기판, 표면적 10cm² 이상 인쇄회로기판, 외부전선, 토너카트리지, 내화성세라믹 함유부품, 브롬계 난연제 함유 플라스틱, 방사성물질 함유부품, 석면 함유부품 등이다.

5) WEEE지침에 따라 적용대상인 되는 10가지 제품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대형 가정용 전기기구(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에어컨 등), ② 소형 가정용 전기기구(전기 청소기,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토스터, 시계 등), ③ IT 및 통신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등), ④ 소비자 일반기기(라디오, TV, 오디오앰프, 악기 등) ⑤ 조명기구(형광등, 낮은 압력 나트륨 램프;저에너지 전구와 통상의 전구는 제외) ⑥ 전기.전자 공구(전기드릴, 선반, 세공, 연마기계 등), ⑦ 완구, 레저용 기기(비디오 게임세트, 슬롯 머신 등), ⑧ 의료장비(투석장치, 방사선요법기기, 심전도측정기, 인공호흡기 등 : 감염 및 이식 제외), ⑨ 검사,제어장치(화재탐사기, 자동온도 조절기 등), ⑩ 자동 판매기.

III. 전기전자제품법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1) 전기전자제품의 개념

전기전자제품은 독일 전기전자제품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전기 또는 전자를 작동에 이용하는 기기와 이러한 전기와 전자의 생산, 전달 및 측정을 하는 기기이다. 동법률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적용범위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전기전자제품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일차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전기가 필요하여야 하고, 휘발유나 가스를 작동하는 제품은 이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전자제품법은 1000볼트(Volt) 이하의 교류전압으로 작동하거나 1500볼트(Volt) 이하의 직류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기에만 적용된다. 유럽연합의 WEEE지침을 제정한 위원회⁶⁾에 따르면 이에 대한 임법근거로 볼트는 기기의 입력전압과 출력전압과 관련되고, 기기 안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제품과 부품의 구분

전기전자제품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전자전자기만이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동법률은 “기기”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른 기기에 부착되는 부품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속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⁷⁾. 전기전자제품법 제3조와 관련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적 적용범위에 관한 많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동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에서 요건규정과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요건규정

6) KOM(2000) 347 endg., S.30 ff.

7) L.Diederichsen/M.A.Ahlhaus, Das neue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sgesetz, NJW 2005, S.2741 ff.

과 예외규정에 대한 해석에 전기전자제품법의 입법동기인 유럽연합의 RoHS지침과 WEEE지침⁸⁾이 중요한 척도로서 기능을 한다. 유럽연합위원회는 WEEE지침과 RoHS지침에 관한 해설서⁹⁾ 제6호에서 부품에 관하여 「전자계약에 관한 회원국의 법령의 동조화에 관한 1989년 5월 3일의 지침(Richtlinie 89/336/EWG v. 3.5.1989 zur 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elektromagnetische Verträglichkeit: EMV-Richtlinie)」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이 기기로서 완제품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품인지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조자의 의무는 전기전자제품법의 규정에 따른 완제품으로 기기의 유통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부품의 제조자는 전기전자제품법이 적용범위에서 부품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물에 따른 의무가 없다¹⁰⁾. 완제품과 부품의 구분은 해당 제품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부품과 구별되는 완제품은 사용자가 시장에서 구매하여 곧바로 또는 간단한 결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조자로부터 완제품을 개별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부품은 독립적인 기능이 없고, 다른 부품과 결합되어야 비로소 제품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전기회로, 케이블, 케이블부품, 플러그, 콘센트, 전자회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컴퓨터모니터, 컴퓨터전자온도조절기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품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완제품에 해당한다.

완제품은 문외한인 최종소비자도 단순한 결합으로서 완제품으로서 기

8)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참조자료로 M.Kohls/K.Wagner-Cardenal, Herstellerpflichten nach dem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NVwZ 2005, S.1111 ff.; L.Diederichsen/M.A.Ahlhaus, aaO., S.2741 ff.; M.Tobias / H.-J.Lückefett, Das Elektrogesezt - Herstellerverantwortung, Altgerätemanagement und Verpflichtete, ZUR 2005, S.231 ff.

9) 유럽연합위원회의 해설서는 Q&A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http://europa.eu.int/comm/enviroment/waste/pdf/faq_weee.pdf 참조.

10) H.Lustermann/H.Holz, Das neue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Anwendungsprobleme in der Praxis, NJW 2006, S.1029 ff.

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개별적 제품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독립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여기서 문외한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넓게 해석하면 문외한은 기술적으로 전혀 숙련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문외한은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의 완제품의 구성품인 부품을 아주 간단하게도 결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외한을 이와 같이 해석하면 동법물의 적용범위가 현저하게 축소되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동법물은 폐전기전자제품의 포괄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동법물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동법물의 적용대상인 제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특정된 제품이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경우 최종이용자의 기술능력에 따라야 한다. 최종이용자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제품을 직접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이 아닌 독립적 기능을 가지는 완제품이 되기 위하여 최종이용자가 필요한 정리와 결합을 결합안내서를 참조하여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3) 적용제외 품목

전기전자제품법은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동법 제2조제1항제1문 후단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 이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제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동법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법물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오디오 및 자동차비디오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토지에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된 전기전자제품도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건물에 고정하여 설치된 에어컨, 온수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기전자기기가 유형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어 기능적으로 단일체인 경우에 동법물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리모콘으로 작

11) M.Tobias/H.-J.Lückefett, aaO., S.231 ff.

동되는 현관문의 경우 리모콘은 토지에 정착된 시설인 현관문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동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게 된다. 동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폐전기전자등록재단(Stiftung Elektro-Altgeräte Register: EAR)의 지침」에 따르면 토지에 정착된 시설과 관련하여 볼 때에 무선이동기기를 토지정착시설물의 일부로서 간주되기 위하여 유형적인 결합일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다. 오히려 무선이동기기는 토지정착시설의 조정에 기여하는 기능적 결합이면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된 대상 간에 유형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법률 제2조제1항제1문 후단의 자구에서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이해에 따르면 개별구성요소 간의 유형적 결합이 없으면 전체의 일부라고 하지 않는다. 리모콘과 조정기기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과 공동으로 이용되고 운영될 때 의미가 있다. EAR도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과 기능적으로 결합된 이동기기는 해당 시설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동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법 제2조제1항제1문 제6호에 의한 토지에 정착된 산업용 거대공작물과 동법률 제2조제1항제1문 제8호에 따른 의료용제기제도 동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제품유형에 따른 의무

동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기전자제품은 제조자에 의하여 동법률 제2조제1항제1문에 따른 제품유형으로 분류된다. 분류되는 유형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품의 분류유형에 따라 동법률 제5조제1항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유해성분의 사용금지에 관한 조문은 의료용전기전자제품과 감속기기와 통제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동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목록에 따른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재활용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정된 전기전자제품은 제품유형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된 제품은 정보통신제품유형에 속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감독과 통제를 위한 제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기전자제품법의 시스템 상으로 제품은 하나의 제품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2개의 제품유형으로 동시에 분류

될 수 없다. 그러므로 2이상의 제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된 전기전자제품은 일차적으로 제조자가 결정하여야 하고, 제조자가 결정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조자가 적합하지 않는 제품유형으로 결정하면 EAR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해당 전기전자제품을 특정된 제품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해당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법률상 적합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제품유형의 분류기준은 해당 전기전자제품의 주된 기능에 따른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제품유형 간의 구별의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제조자가 자체분류를 통하여 극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전자제품법의 근거가 되는 유럽연합의 WEEE지침과 RoHS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을 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이고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품유형에 관한 전기전자제품법 [부속서 I]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목록은 예시적 규정이고, 열거적 규정이 아니다¹²⁾. 부속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품은 일반적 시스템원칙에 따라 열거된 제품의 기능방식과 대등한 경우에 전기전자제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동법률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명시하지 않고,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2005년 11월 23일까지 등록할 수 없는 제조자는 전기전자제품법 제6조제2항제5문에 따라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의 유통을 금지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제조자가 이러한 유통금지에 위반하게 되면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50,000유로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법 제2조제1항은 제품유형을 10개로 분류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법 [부속서 I]은 이러한 유형의 구체화를 위하여 예시와 함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제품유형의 분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전기전자제품의 주된 기능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인가 아니면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영역이 개인생활로 제한되는 것은 제품유형분류 중 유형 1과 유형 2에 속하는 대형가전제품과 소형가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을 뿐이다. 전기전자제품이 개인의 생활에 사용되는가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되는가가 제품유형의 분류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유럽

12) BT-Drs. 15/3930, S.20.

연합의 WEEE지침과 RoHS지침의 이행이 독일의 전기전자제품법의 제정목적이고, 이 두 지침의 목적은 유해한 성분을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침의 목적에서 볼 때에 특정된 전기전자제품이 개인생활에 사용되는가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제품의 특성과 구성성분이 중요할 뿐이다¹³⁾.

IV. 제조자

1. 제조자의 개념

동법률 제3조제11항은 제조자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률 제3조제12항제2문은 추가적 사례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조자의 그룹을 5개로 분류하고 있다.

- 첫째, 자기의 상표로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여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유통하는 제조자
- 둘째, 자기의 상표로 다른 공급자의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여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재판매하도록 하는 자. 여기서 재판매자는 제조자의 상표가 제품에 부착되어도 제조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셋째,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전기전자제품을 처음으로 유통시키는 자
- 넷째,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수출하여 그 국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
- 다섯째, 전기전자제품법 제3조제12항제2문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제조자의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도록 제공하는 판매자

법률상 제조자의 개념은 동법률 제3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도출되는 바와 같이 제품의 시장과 연계되고, 제조자의 회사와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이

13) HLustermann/H.Holz, aaO., S.1029 ff.(1031 f.).

유에 따르면 동법률 제3조제11조에 의한 제조자의 개념은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조자로 하고 있다. 동법률 제3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독일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가지고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조자이다. 물론 외국의 생산자도 해당 제품이 자기의 상표로 생산되고 독일에 거주하는 수입자에게 제품판매를 하여 유통하게 하는 경우에 동법률 제3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제조자가 될 수 있다.

2. 유통

유통에 관하여 독일 전기전자제품법이나 유럽연합의 RoHS지침과 WEEE지침은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의 해설서에 해당하는 Q&A(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의한 유통의 개념은 제품이 처음으로 유럽연합의 시장에 판매와 관련된다. 유통은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넘겨주는 행위이다. 판매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제조 후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⁴⁾. 동법률 제3조제12항제2문에 의한 도매상이나 소매상도 등록하지 아니한 제조자의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질 때에는 동법률상의 제조자가 된다.

V. 제조자의 의무

1. B2B제품과 B2C제품의 구별

동법률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회수의무, 재활용의무 및 처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2006년 3월 23일부터 발생

14) Leitfaden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für die Umsetzung der nach dem neuen Konzept und dem Gesamtkonzept verfassten Richtlinien.

한다. 동법률은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가전용에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소위 “Business-To-Consumer-Geräte”: B2C-제품이라 한다)과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소위 “Business-To-Business-Geräte”: B2B-제품이라 한다).

B2B제품과 B2C제품의 구별이 가지는 의미는 동법률에서 부과하고 있는 제조자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다. 분리된 제품책임의 원칙은 B2C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동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을 수집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제조자는 동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집시설에서 가정용 폐전기전자제품을 다시 회수하여 재활용, 재사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조자에게 부여된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조자는 동법률 제6조제3항제1문에 따른 재정적 보증을 하여야 한다.

B2B제품은 제품의 소유자 또는 제조자에게 처리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즉, 동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품소유자는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유통된 구제품의 처리책임을 지고, 제조자는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유통된 신제품에 대하여 회수 및 처리책임을 진다. 법률은 이 경우에 제조자와 이용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B2B제품과 B2C제품간의 구별은 동법 제3조제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전용품의 개념에 따르고 있다. 동법률상 가전용품은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에 따른 가전제품과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에 따른 폐전기전자제품의 특성과 양이 가정생활에서 발생한 폐가전제품과 대등한 폐전기전자제품이다.”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에 따른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개인생활에서 전형적·정상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이다. 그러므로 상업분야, 산업시설, 자유업의 행사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정집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유사할 수 있다. 결국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전형적으로 가정생활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2. 등록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는 늦어도 2005년 11월 23일까지 폐전기전자등록제단

(EAR)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의무는 B2B제품과 B2C제품의 범주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제조자에게 부여되고 있다. 동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제조자는 EAR 홈페이지¹⁵⁾에 접속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상표, 회사, 주소, 지점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로써 동법률의 적용지역에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정된 제조자에 귀속하게 된다. 모든 제조자는 등록으로 인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거래 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제조자의무와 이러한 의무이행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이러한 등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표시

동법률 제7조는 2005년 8월 13일 이후부터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처음으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표시사항은 해당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와 최종유통시점에 관한 사항이다¹⁶⁾. 물론 이러한 표시의무는 동법률 제24조에 따라 200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은 동법률 [부속서 II]에 따라 심볼(마크)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심볼(마크)은 일반 가정폐기물컨터이너에 전기전자제품을 버려서는 안 되고, 폐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을 수집하는 전용 컨터이너에 처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4. 과산보증금

(1) 대상

동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2005년 8월 13일 이후부터 유통되는 모든 B2C제품에 대하여 모든 제조자는 EAR에 매년 가정용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에 필

15) <http://www.stiftung-ear.de>

16) 전기전자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DIN EN 50419 "Kennzeichn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entsprechend Art.11(2) der Richtlinie 2002/96/EG(WEEE)"에서 정하고 있다.

요한 재원에 대한 파산보증을 하여야 한다. 파산보증의 목적은 수명이 장기간 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제조자가 파산한 후에도 해당 제조자가 판매한 전기전자제품은 사용한 후에 폐기할 때에 해당 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할 의무자가 없게 되는 문제는 방지하는 데에 파산보증금은 목적을 두고 있다.

(2) 방법의 다양성

파산보증은 동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파산보증은 개인적으로 보험, 은행잔고유치, 확정금의 예치, 순환적 인적보증 또는 폐기전제품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적합한 시스템에의 참여 등에 의하여 집단보증을 하여야 한다. 보증금의 액수는 동법률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제조자에 의하여 선택된 산정방식에 따라 평가된 폐기물처리비용에 따라서 정해진다.

5. 회수의무와 재활용의무

(1) B2C제품의 회수의무

제조자의 회수의무는 동법 제10조에서 도출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부분적 의무가 있다. 동법률 제9조제4항과 제5항에 의하면 공법상 폐기물처리주체는 제품유형별로 수집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제조자로 하여금 수집소에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류된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조자는 특정된 수집용기를 수집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폐전기전자제품은 5개의 그룹유형으로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 대형가전제품, 자동판매기
- 냉장고
- 정보통신기기 및 대화기기
- 정원적재램프

- 소형가전제품, 전등, 전기전자 공구, 장난감, 스포츠기기, 여가기기, 의료기기, 감동통제기계

폐전기전자제품 수집용기는 동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양에 합치하여야 한다¹⁷⁾. 수집용기는 동법률 제16조에 의한 EAR의 규정에 따른 제조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동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2006년 3월 23일부터 공법상 폐기물처리주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수집소에 설치된 B2C제품의 수집용기를 회수하여야 하고, 회수된 폐전기전자제품을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으로 재사용, 재활용 또는 재제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비용은 제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조자가 회수하도록 설치된 센터이너의 회수책임자는 EAR가 결정한다.

제조자는 폐제품의 수집컨테이너의 수집과 수집된 폐제품의 처리의무를 위해 다른 제조자와 공동으로 집단회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동법률 제9조제6항에 의한 공법상 처리주체는 특정된 그룹유형에 속하는 전체 폐전기전자제품을 종합수집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전기전자제품 자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법상 처리주체가 특히 수익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의 그룹유형에 대하여 종합수집소로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써 제조자는 수익성이 낮은 폐전기전자제품만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집용기의 회수에 관한 대안으로 제조자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의무를 집단적 또는 개인적 회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자는 자기의 전기전자제품 회수를 보장할 수 있다.

(2) B2B제품의 회수의무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이 아닌 사업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제조자는 동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회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회수된 제

17)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LAGA-Mitteilung Nr.31에서 규정하고 있다 : <http://www.laga-online.de>.

품은 제조자 또는 대행자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2005년 8월 13일 이후부터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동법률 제10조제2항제2문에 따라 최종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B2B제품에 대하여 2006년 3월 23일부터 자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수집용기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법률 제10조제2항제3문은 제조자와 이용자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자는 제품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공급한 제품의 수명이 도과한 후에 법률에 따라 자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조자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회수된 제품은 동법률 제11조 및 제12조, 동법률 [부속서 III]과 [부속서 IV]에 따라 재활용되어야 한다. 재활용은 동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6. 재활용친화적 제품설계의무

2005년 8월 13일부터 전기전자제품은 동법률 제4조제1문에 따라 분해와 재활용이 가능한 설도록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한다. 또한 제조자는 동법률 제4조제2문에 따라 제품의 특정된 구조적 특징이나 생산공정으로 재제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기전자제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동법률에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제조자가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품을 재제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¹⁸⁾. 다만, 해당 제품의 특정된 구조적 특징 또는 생산공정의 장점을 고려할 때에 환경보호적 요소 또는 안전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재활용친화적 생산의무가 특정된 제품유형 또는 개별적 전기제품에만 부여되는가의 여부는 불명확하다. 제품유형만을 의미하는 경우에 이미 시장에 유통되는 유형의 제품은 구조적으로 재製를 방해하여도 2005년 8월 13일 이후에도 유통될 수 있다. 그렇지 아니 한 경우에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유형은 신제품으로 개조되어야 한다.

18) BT-Drs.15/3930, S.22.

7. 특정유해성분사용의 금지

(1) 특정된 환경유해성분의 사용금지

동법률 제5조제1항제1문과 제2문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6가 크롬, PBBs 또는 PBDEs은 동일한 제작자료의 무게의 0.1% 이상 또는 카드뮴 0.01%이상 함유하는 전기전자제품은 유통될 수 없다. 유해성분함량은 전기전자제품별로 정하게 된다. 또한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유통된 전기전자제품의 수선 또는 재사용을 위한 부품의 사용도 금지된다.

특정된 환경위해성분의 사용금지는 극단적인 경우에 제조자가 개별제품을 더 이상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유해성분의 사용금지가 해당 제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거나 제품의 기능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므로 동법률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 이러한 제조자에 대한 예외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 요건은 이 법률의 효력이 발하기 이전에 이미 장기 계약에 의하여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제조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제품의 이용자도 해당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또는 불량제품의 교체를 하여야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적용제의 제품

특정된 성분의 사용금지는 의료용 제품(제품유형 8)과 감독통계 기기(제품유형 9)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동법률 제5조제1항제2문에 따라 유해성분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²⁰⁾. 또한 동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면 RoHS지침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의 하

19) H.Lustermann/H.Holz, aaO., S.1031 ff.

20) 물론 RoHS지침 제6조는 유럽연합위원회가 제품유형 8과 제품유형 9에 속하는 제품을 유해성분의 사용금지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유해성분사용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규정과 달리 동법률 제5조제1항제3문은 특정된 제품유형 또는 제품의 특별한 사용목적에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유해성분의 사용금지는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유통된 전기전자제품의 수선 또는 재사용에 사용되는 부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다수의 기기로 구성된 종합시스템의 기능적 부분에 해당하는 이동성 대체기 또는 교환기에 대하여도 동법률 제5조제1항제3항이 적용되어 유해성분의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체기는 제품의 기능성을 유지하거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품에 다른 기기를 결합하는 기기이다. 즉, 대체기는 기존 기기의 수선과 결부된 개념이다. 기능적으로 종합시스템에서 대체되는 제품이 독자성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교체제품을 대체제품이라 할 수 있다. 환경유해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대체제품은 부품으로 취급되어 환경유해성분의 사용이 허용된다. 왜냐하면 RoHS지침에 의하면 “제품의 재사용, 재생산 및 수명연장은 환경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환경적 이익은 특히 사용가능한 많은 전기전자제품이 조기에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전체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에 특정된 유해성분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해당 구성제품을 사용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시스템을 폐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시스템사용자는 기존의 시스템을 해체하고,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구성제품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사용가치가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보다 빨리 폐기물로 처리되고,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RoHS지침과 전기전자제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기능적으로 종합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제품을 부품으로 간주할 때에 해결될 수 있다.

8. 통보의무

(1) EAR에 통보의무

동법률 제13조는 제조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자에게 통보의무와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조자는 2005년 11월 23일부터 EAR에 매월 제조자에 의하여 유통된 제품의 종류와 양 및 회수·수집·재사용·재활용 또는 수입된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AR는 제조자의 개인적 회수의무를 제조자의 제조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 회수가능성과 처리가능성은 개개의 조치가 법령에 적합하게 실행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조정될 수 있다.

EAR에 대한 제조자의 통보의무는 2006년 3월 23일부터 매년 발생한다. 통보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제조자가 공법상 처리주체로부터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양, 제조자에 의하여 개별적·집단적 회수시스템으로 수집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종류와 양, 제품유형별로 제조자에 의하여 재사용되고, 재활용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양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제조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조자가 지난해에 확정한 일자에 재활용시설과 취급시설의 양과 관련하여 추가된 폐전기전자제품, 부품, 공작자료 및 성분을 EAR에 통보하여야 한다²¹⁾. 통보는 구체적인 전기전자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EAR는 동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특정된 제품유형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재활용시설에 통보의무

제조자는 동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2006년 3월 23일부터 제제조시설, 취급시설 및 성분재활용시설에 유통된 모든 유형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각 제품의 유통 후 1년 안에 책자형태 또는 전자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 정보에서 해당 제품이 어떠한 부품과 성분으로 구성되었고, 전기전자제품의 어느 곳에 위험한 성분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모델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견해²²⁾에 의하면 제조자는 신 모델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되고 있는 구 모델에 대하여서도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거를 전기전

21) M.Kohls/K.Wagner-Cardenal, aaO., S.1114 f.

22) M.Kohls/K.Wagner-Cardenal, aaO., S.1115 ff.

자제품의 모델은 통보의무의 발생 시점인 2006년 3월 23일 이후에도 동일한 모델이 새롭게 생산되는 데에 두고 있다. 이와는 다른 견해에 의하면 동법률은 통보의무의 대상을 모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이 동법률의 입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견해의 논거는 통보의무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문제의 성분을 가능한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자는 데에 두고 있다.

9. 제조자의무의 전가가능성

동법률에 의하여 제조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는 공법상 의무이다. 그러므로 제조자는 동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조자는 공법상 부여된 이러한 의무를 납품업자, 대리점 등과 계약을 통하여 부담의 일부를 회피할 수 있다.

동법률 제10조제2항제3문에 따르면 제조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처리 책임자를 제조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조자가 대리점, 수입업자 또는 납품업자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면, 제조자는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유통되는 제품의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물론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는 동법률 제10조제2항제1문 및 제2문에 의하여 제품의 소유자가 회수와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공법적 의무는 이와 같은 계약으로 계약의 상대방에게 전가된다²³⁾.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동법률에 따른 공법적 벌칙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부과되고, 동법률상 원래의 의무자인 제조자에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조자가 동법률 제10조제2항제3문에서 규정된 법률상 의무를 전가하기 위하여 제조자는 취급하는 제품이 일반소비자제품이 아니라 사업자간 사용되는 제품임을

23) 이에 관하여는 Bullinger, in: Bullinger/Fehling, ElektroG, 2005, §10 Rdnr.20; 다른 견해는 Giesberts/Hilf, ElektroG, 2006, §10 Rdnr.31 ff.

EAR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확인을 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 제품이 일상적으로 동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동법률의 입법이유에 따르면 에 대한 입증은 해당 제품이 가정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조자와 대리점간의 계약서로 한다²⁴⁾.

제조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를 계약을 통하여 대리점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해당 제품이 일반소비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동법률에 이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조자는 자기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대리점업자에게 제조자에게 부여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의무를 넘겨받는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납품업자 또는 대리점업을 동법률에 따른 제조자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타 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유럽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사용이 완료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VI. 전망과 국내법에 시사점

2006년 7월 1일 이전까지 유럽연합의 RoHS지침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세계의 전기전자산업계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은 RoHS지침과 관련된 연방법률이 없어 미국의 산업계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어셈블리 기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유럽 시장에 유통하기 때문에 RoHS지침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제 유럽연합의 RoHS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이 글로벌화한 시대에서 세계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법률은 제조자에게 부여된 개별적인 의무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법률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시행되도록 하지 않고, 조문별로 효력발생의 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에 대해 꾀묵할 만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조자에 대한 의

24) BT-Drs. 15/3930, S.24.

무를 일시에 부여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전자제품의 시장에 증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자의 수인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동시에 제조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서 법률의 실행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가능한 축소하는 의미를 가진다.

유럽연합은 2008년 초에 RoHS지침에 대상물질의 추가와 적용제외물질의 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개정대상은 현재 29개의 적용제외조항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될 7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적용제외의 대상인 29개의 유해물질 중 현재 대체물질이 개발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제한물질로는 기존의 6종 유해물질에서 LEDs, ICs 및 합금 내 비소, 난연제, 베릴륨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WEEE지침의 제품유형 8번과 9번에 속하는 의도기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를 RoHS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해당제품이 RoHS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타임플랜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RoHS지침의 시행 초기에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던 보일러 또는 에어컨디셔너 등과 같은 고정설비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RoHS지침의 적용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독일의 전기전자제품법도 개정이 될 것이고, 한국의 전기전자제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독일의 전기전자제품법의 제정은 수많은 기업을 당황하게 하였다. 동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중요한 수많은 개념이 동법률, WEEE지침 및 RoHS지침에서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제와 요구사항에 관하여 다층적인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법적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도 2007년 3월 30일 정부에 의하여 발의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7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동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 법률은 유럽연합의 RoHS지침과 WEEE지침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률 제9조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률을 지키도록 하며, 재활용이 쉬운 물질의 사용 등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제조자에 대한 의무부과는 유럽연합의 RoHS지침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률 제12조에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활용사업자가 그에 맞추어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유럽연합의 WEEE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럽연합의 RoHS지침과 WEEE지침을 반영한 한국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을 자동차도 포함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유럽연합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를 다른 지침에서 하고 있어 RoHS지침과 WEEE지침에서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정 유해성분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거나 재활용을 촉진하는 규정을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법률에서 자동차도 대상범위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전자제품을 예외 없이 동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의도기기, 감시기기, 부품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 시에 환경보다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는 의료기기가 더 이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RoHS지침과 WEEE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함에 있어 국내의 적용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동법률의 실질적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RoHS지침과 WEEE지침의 기본목적과 함께 집행현실성을 위하여 고려한 입법과정에 논의된 사항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에 국내법을 제·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Bullinger, in: Bullinger/Fehling, ElektroG, 2005, §10 Rdnr.20
- Diederichsen, L./Ahlhaus, M.A., Das neue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NJW 2005, S.2741 ff.
- Europäische Kommiss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Directive 2002/95/EC and Directive 2002/96/EC, S.15.
- Giesberts/Hilf, ElektroG, 2006, S.31 ff.
- Lustermann, H./Holz, H., Das neue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 Anwendungsprobleme in der Praxis, NJW 2006, S.1029 ff.
- Holz, Die abfallrechtliche Verantwortung der Hersteller von Elektrogeräten, 2004.
- Kohls, M./Wagner-Cardenal, K., Herstellerpflichten nach dem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NVwZ 2005, S.1111 ff.
- Lustermann, H./Holz, H., Das neue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 Anwendungsprobleme in der Praxis, NJW 2006, 1029 ff.
- Schmalz/Fehling, in: Bullinger/Fehling, ElektroG, 2005, § 5 Rdnr.15
- Tobias, M./Lückefett, H.-J., Das Elektrogesetz - Herstellerverantwortung, Altgerätemanagement und Verpflichtete, ZUR 2005, 231 ff.
- BT-Drs. 15/3930, S.20.
- BT-Drs. 15/3930, S.24.
- BT-Drs.15/3930, S.22.
- <http://www.laga-online.de>.
- <http://www.stiftung-ear.de>

<Zusammenfassung>

Zum Rechtssystem für Beschränkung der Verwendung bestimmter gefährlicher Stoffe und Förderung der Resourcenkreislauf in BRD
- Zum neue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in BRD als Ausführungsgesetz von RoHS und WEEE

YI, Jong-Yeong

Das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 ElektroG) von 16.3.2005 trat in weiten Teilen am 13.8.2005 in Kraft. Das Gesetz setzt die Richtlinie 2002/9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1.2003 über Elektro- und Elektronikaltgeräte(sog. WEEE-Richtlinie) und Die Richtlinie 2002/9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1.2003 zur Beschränkung der Verwendung bestimmter gefährlicher Stoffe i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sog. RoHS-Richtlinie) um.

Die Hersteller waren gem. §6 I ElektroG verpflichte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IN-Kraft-Treten des Gesetzes eine Gemeinsame Stelle nach §14 ElektroG einzurichten. Aus der bereits 2003 gegründeten Projektgesellschaft ist nunmehr die Stiftung Elektro-Altgeräte Register(EAR) hervorgegangen, der mit Beleihungsbescheide des Umweltbundesamts vom 6. 7. 2005 verschiedene Befugnisse übertragen wurden.

Nach §3 I ElektroG sind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 im Sinne des Gesetzes Geräte, die zu ihrem ordnungsgemäßen Betrieb elektrische Ströme oder elektromagnetische Felder benötigen sowie Geräte zur Erzeugung, Übertragung und Messung solcher Ströme und Felder. Der Begriff des Herstellers wird in §3 XI ElektroG definiert. Der gesetzliche Herstellerbegriff an die Märkte eines Produkts und nicht an die Firma des Produzenten an.

Hersteller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haben sich bis spätestens 23. 11. 2005 bei der EAR registrieren zu lassen. Das Registrierungsverfahren wird online über eine Seite der Website der EAR bereitgestellte Software abgewickelt. Zur Gewährleistung dieser Zuordnung sieht §7 ElektroG eine Kennzeichnungspflicht für Elektro- und Elektronikgerät vor, die nach dem 13. 8. 2005 in einem Mitgliedstaat der EU erstmals in Verkehr gebracht werden. Hersteller von Geräten, die in privaten Haushalten verwendet werden können, haben mit dem Antrag auf Registrierung eine insolvenzsicher Garantie für die Finanzierung der späteren Rücknahme und Verwertung von Altgeräten vorzulegen. Hersteller haben den öffentlich-rechtlichen Entsorgungsträgern Behälter zur Sammlung von Altgeräten bereitzustellen. Die Behälter müssen den näheren Spezifikationen des §9 V ElektroG entsprechen. Sie sind von den Herstellern nach Maßgabe einer Anordnung der EAR gem. §16 V ElektroG abzuholen. Ab dem 1. 7. 2006 dürfen keine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 mehr in Verkehr gebracht werden, die mehr als 0,1 Gewichtsprozent Blei, Quecksilber, sechswertiges Chrom, polybromiertes Biphenyl(PBB) oder polybromierten Diphenylether(PBDE) je homogenem Werkstoff oder mehr als 0,01 Gewichtsprozent Cadmium je homogenem Werkstoff enthalten. Zur Gewährleistung der Entsorgungspflichten der Hersteller bestehen gem. §13 ElektroG weit reichende Mitteilungs- und Informationspflichten.

주 제 어 전기제품, 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회수의무, 통보의무.

Key words Elektrogeräte, Elektronikgeräte, Verwertungspflicht, Rücknahmepflicht, Mitteilungspflicht